

## LINC 3.0 사업 강의료 지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LINC 3.0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LINC 3.0 사업비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료 종류) 강의료는 강사료, 자문료, 심사료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교외에서 초빙한 강사와 교내 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강의료의 지급 구분) ① 강의료는 별표 1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교내 강사의 경우 교과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규프로그램, 특강 등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여비) ① 교육을 위한 특강 등에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 여비는 공무원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및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를 적용한다. 다만, 강사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의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지침」에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1.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LINC 3.0 사업 강의료 지급 기준

1. 강의(자문)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강사(심사)료 (1시간 기준)	1등급	기관장, 저명인사	금200,000원 이하
	2, 3등급	책임급 (교수, 부교수 이상)	금150,000원 이하
	4등급	선임급 (조교수, 비전임교원)	금100,000원 이하
	5등급	1~4등급 미해당자	금50,000원 이하
	내부 강사	전체 교원	금50,000원 이하
자문료	1일 4시간 기준		금200,000원 이하

※ 공직자등 등급별 사례금 상한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름

※ 내부 강사의 경우 비정규프로그램, 특강 등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함

2. 강사 시간의 산정

시간의 산정	지 급 액
1시간 이하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 4시간 초과 시 1시간 지급액은 LINC 3.0 사업단과 사전 협의 후에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4시간 초과 시 1시간 지급액은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대학, 기관별 직급 산정 기준표

소 속	1등급	2, 3등급	4등급	5등급(1~4등급 미해당자)	
대학	기관장, 저명인사	교수, 부교수 이상	조교수, 비전임교원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
기업 · 기관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li> <li>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li> <li>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li> <li>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li> <li>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li> <li>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li> </ul>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3급 이상	4,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직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